

취재요청서	
취재요청일/장소	2026년 4월 8일 (수) 10:30 / 민변 대회의실
담당	이상현 (공익법단체 두루) 010-9503-1271
배포일	2026년 4월 7일 (화)

400일간의 공항난민 불법구금 관련 유엔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결정 발표 기자회견

- "자유권규약 위반 인정, 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귀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공항에 불법구금되었던 공항난민 당사자의 사진

취지 및 배경

- 지난 2021년, 콩고 출신 난민 신청자가 인천공항 입국 대기실에서 4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구금되었던 소위 ‘공항 난민’ 사건과 관련하여, 유엔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최근 한국 정부의 조치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을 위반했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재발 방지를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 이에 본 사건의 대리인단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유엔의 결정을 환영하며, 장기간 인권을 방치한 한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권고 사항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6년 4월 8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민변 대회의실(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74, 스탠다드빌딩 지하1층)
- 주최: 공익법센터 어필,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 행정구금 권리구제단,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공익법단체 두루

발언 순서

- (1) 진정 사건 경과 공유: 이일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 (2) 당사자 발언 대독
- (3) 출입국향 난민에 대한 비호의 필요성: 이상현 변호사 (난민인권네트워크 출입국향 WG)
- (4) 위법한 구금에 대한 보상과 사과 요구: 김진 뉴질랜드 변호사 (난민 행정구금 권리구제단)
- (5) 유엔 자유권위원회 결정의 국내법적 효력과 국가의 이행 의무: 서채완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주요 요구 사항

-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공식 사과 및 실질적 피해 보상
- 난민 신청자의 공항 내 무기한 구금을 가능케 하는 현행 제도와 관행의 즉각적 폐지

불법구금 사건에 관한 기존 언론 보도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91332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302>
- <https://www.khan.co.kr/article/202406231528001>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7835.html

2026. 4. 7.

공익법센터 어필,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 행정구금 권리구제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공익법단체 두루

1. 난민 당사자의 과거 상황 요약 및 법적 조치

당사자는 콩고민주공화국 국적의 남성인데, 아시아나항공 베트남 호치만발 항공권(인천국제공항 경유)을 구매한 다음 2020. 2. 15. 18:14경 경유지인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도착함.

당사자는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항공편에 환승하지 아니한 채, 입국장 C지역으로 진입하여 있다가 같은 날 출입국사무소 직원에 의해 C지역 출입국사무소 사무실로 인계되고 보안관리 부서 직원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난민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그는 비호신청 이유에 대해 짧은 인터뷰를 진행 후, 공무원은 그가 환승객이며 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국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내했고, 항공사 직원에게 인계되어 공항 제 1 터미널 환승구역으로 인도됨.

진정인은 그때부터 환승구역에 머물게 되었음.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환승객인 원고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니 원고가 난민법 제6조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조력을 하지 않고 있고, 당사자는 그곳 출국장 복도 등에서 현재까지 여행객들이 주는 음식 등을 취식하며 기거하였음.

이후 비호의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난민심사 미개시된 점,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인 구금에서 풀려나야 한다는 점, 강제송환금지의무에 반한다는 점(절차, 실질) 등을 다투면서 국내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가 소위 국경에서의 거부를 명확히 범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에 개인진정(잠정조치 포함) 접수하게 되었음.

2. 자유권규약위원회 신청 부터 현재까지 법적 조치(배보상 제외)

[표 삽입을 위한 여백]

국제인권메커니즘 HRC 개인진정 (정신영 변호사)	국내법 난민신청접수거부 등	국내법 인신보호	국내법 난민불인정결정취 소
2020. 2. 15. 도착 이후 난민신청 접수 거부			
(진정인) 2020. 5. 1. 진정서 접수	2020. 3. 31. 부작위위법무효확인 등 소제기(인천지법202 0구합51536)		
2020. 5. 26. 자유권규약위원회 잠정조치(interim measure) 발령 – not to deport			
(한국정부) 2020. 9. 7. 한국정부의 허용가능성 다툼 (진정인)2020. 12. 14. 허용가능성 답변	2020. 6. 4. 원고승소 2021. 4. 21. 피고항소기각(서울 고법2020누45348)	2020. 7. 13. 인신보호구 2020. 11. 16. 구제청구 기각(인천지법 2020인62)	
[2021. 5. 24. 회부결정 후 입국]			

국제인권메커니즘 HRC 개인진정 (정신영 변호사)	국내법 난민신청접수거부 등	국내법 인신보호	국내법 난민불인정결정취 소
(대한민국)2022. 7. 6. 허용가능성 및 이유 없음 의견 (진정인)2022. 11. 7. 허용가능성과 이유에 관한 답변 (대한민국)2023. 2. 1. 이유 없음에 관한 추가 의견 (진정인)2023. 6. 8. 추가 답변 (대한민국)2023. 11. 17. 허용가능성과 이유에 관한 의견 (진정인)2025. 6. 2. 추가 답변		2021. 8. 9. 구제청구 각하(이미 입국하였으므로, 그러나 이유에서는 불법구금 확인)(2020인라8)	2023. 8. 29. 인천출입국.외국인 청 난민신청 기각 2023. 11. 24. 법무부장관 이의신청기각 2024. 7. 26. 난민소송 1심 기각(서울행정법원)
2026. 3. 13. 자유권규약위원회 견해 채택			

3. 한국정부의 부당한 주장의 개요 및 자유권규약 위원회의 배척

대한민국 답변	진정인 의견(정신영 변호사)
2020. 9. 7. (허용가능성) I 국내절차 미소진(비호신청 관련 소송, 인신보호 청구의 계류) (이유) I 환송구역에서 ‘의료시설 및 다양한 시설 이용 가능’ I 인신보호 1심이 기각하였으므로 구금 아님	2020. 12. 14. (허용가능성) I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므로 국내절차가 실효적이지 않음 (이유) I 환송구역에서 생계수단 미제공(변호사들의 지인이 기부한 돈으로 음식 구매 및 승객들이 주는 음식으로 연명) I 라운지, 샤워실 등은 코로나-19이후 폐쇄 I 인신보호 1심에 대해 항고하였고 얼마나 걸릴지 불분명 I 건강상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진통제만 처방
2022. 7. 6. (허용가능성) I 국내절차 완료 x, 지연되거나 비효율적이지 않음(부작위위법무효 확인소송 인용되었고, 승소하여 결국 난민신청자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 (이유) I 국경에서 난민신청 거부는 ‘강제추방이나 사실상의 강제송환을 구성하지 않음’(추방 안시킬 것이고, 스스로 돌아가면 되는데	2022. 11. 7. (허용가능성) I 난민신청수리, 석방은 이루어졌으나 난민심사는 여태까지 진행이 안됨. 건강 악화로 자선활동에 의존하며 생활 I 2020. 6.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심에서 승소하였을때 입국을 시켰어야 하는데, 행정청은 항소하면서 결국 2021. 4. 13.에야 14개월이 지나서 석방되었으므로, 구제절차 지연은 정당화될 수 없음.

대한민국 답변	진정한 의견(정신영 변호사)
자의로 공항에남아 있는 것임) I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음.	I 손해배상청구는 보복이 두려워하지 못함 (이유) I 환승객이란 이유로 심사기회도 안주고 불허하는 것은 강제송환금지 위반 I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주장은 ‘법적 허구(legal fiction)’이며, 위원회 결정에 따라 ‘피구금자의 구금 정기심사가 있어야 하는데’ 입법조치와 근거도 없이 구금 I 환승구역에서 무자력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 I 코로나19에 대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음. I 대리인을 통한 생필품으로 겨우 생활함.
2023. 2. 1. (허용가능성) I 낮은 난민인정율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해왔음 I 행정소송 승소로 나왔으므로 부당한 구금지연 없었음 I 모든 원하는 수단이 만족됨(배상 제외) I 서울고등법원이 ‘환승객도 난민신청 가능’하다는 판결인용하며 제도 개선했다고 답변	2023. 6. 8. (허용가능성) I 39개월이 지났으나 난민면접도 이뤄지지 않음. I 건강악화로 근로가 불가능하고 빈곤한 삶 I 난민심사 결론이나도 배보상이나 강제송환금지의무 위반(공항에서) 답은 안나옴

대한민국 답변	진정인 의견(정신영 변호사)
2023. 11. 17. (허용가능성) I 국내구제절차 미소진(이후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하였음) I 난민면접 두차례 불출석하였고 이후 불인정결정, 이의신청 기각되었음. (이유) I 자의적 구금 아님. 인신의 자유 제한 없음. I 인천공항은 도보로 50분이 소요되고 넓음. I 2022. 8.부터는 출국대기실에서 식사를 일부 제공한다고 반박.	2025. 6. 2. I 난민절차, 국가배상 등이 실효적이지 않았음에 대한 업데이트

(자유권규약 위원회의 결론)

1. 허용가능성

I 12.6 위원회는 진정인이 구제 수단이 해당 사건에서 실효적이고 진정인에게 사실상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국내 구제 절차를 거칠 의무가 있으며, 구제 수단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는 경우 실효적이라고 간주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상기합니다. 또한 진정사항을 검토할 때 국내 구제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은 진정이 검토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판례도 상기합니다.

I 12.7 본 사건에서 위원회는 진정인이 2020 년 3 월 31 일 취소 청구를 제출했고 최초진정 제출 후 점진적으로 국내 구제 수단을 사용해 왔다는 당사국의 주장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진정인이 자신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속에서 공항 환승구역에 있는 동안, 그리고 행정 소송의 정지효가 부재하여 언제든지 강제송환될 위험을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국내 수준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시도를 했음을 주목합니다.

I 12.8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위원회는 관련 국내 구제 절차가 이용불가능했거나(예: 환승객의 난민 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 절차 부재), 부당하게 지연되었거나(예: 취소 소송 후 RSD 절차가 이어짐), 부분적으로만 실효적이었다고(예: RSD 절차 지연 및 집행 정지 부재, 낮은 인정률, 인신보호

및 손해배상 청구의 비효율성 등) 간주합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 5 조(2)(b)에 따라 진정인의 주장을 검토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결론짓습니다.

2. 본안

I (제7조) 강제송환금지의무 위반

n 13. 4. (...) 난민 협약상의 의무가 국내법을 통해 이행되더라도 국내법은 인권법과 규약상의 의무를 동시에 준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위원회는 진정인이 출입국항에 있지 않고(즉, 국경이나 영토에 있지 않고), 환승객이라는 이유만으로 2020 년 2 월 15 일부로 비호신청권(author was denied his right to seek asylum)을 거부당했다고 간주합니다. 위원회는 진정인의 난민 신청이 형식적인 이유(formal grounds)로 거절됨으로써 DRC 로의 강제송환으로부터 보호를 구할 기회를 박탈당했다(was deprived of the opportunity to seek protection from refoulement)고 봅니다. 따라서 당사국이 규약 제 7 조에 따른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결론짓습니다.

I (제9조 제1항) 자의적 구금금지의무 위반

n 위원회는 진정인이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며 14 개월 동안 환송구역에 머물러야 했음을 관찰합니다.

n 13.6 위원회는 신체의 자유 박탈이 공항의 제한된 구역에 갇히는 것을 포함하여 좁은 공간 내에서의 엄격한 이동 제한을 수반하며 그러한 박탈이 자유로운 동의 없이(without free consent) 이루어진다는 결정례들을 상기합니다. 또한 난민을 장기간 무기한 구금하는 것은 자의적일 수 있음(that the detention of refugees for lengthy and indefinite periods can be arbitrary)을 관찰합니다, (...) 위원회는 진정인에 대해 어떠한 행정 명령도 없이 법적 근거 없이(without legal ground, as no administrative order was issued against him) 공항 환송구역에 구금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진정인이 얼마나 구금될지 알지 못한 채 무기한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구금되었으며, 비례성이나 필요성도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본 사건의 상황에서 자의적인 구금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로써 규약 제 9 조(1)에 따른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I (제10조 제1항) 피구금자에 대한 인도적 처우 위반

n 위원회는 진정인이 2021 년 4 월 13 일 석방될 때까지 비위생적인 조건, 충분하지 않은 숙소, 적절한 음식과 약품의 부재, 그리고 24 시간 내내 켜져 있는 조명에 노출되었음을 주목합니다. 위원회는 규약 제 10 조(1)에 따른 진정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합니다.

I (결론)

n 15. 규약 제 2 조(3)(a)에 따라 당사국은 진정인에게 실효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규약상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에게 완전한

배상/회복(full reparation)¹¹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당사국은 진정인이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국은 향후 유사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to take all steps necessary to prevent similar violations from occurring in the future.)가 있습니다.

- n 16. 당사국은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됨으로써 규약 위반 여부를 결정할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했으며, 규약 제 2 조에 따라 영토 내 및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게 권리를 보장하고 침해가 확인된 경우 실효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견해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180 일 이내에 당사국으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당사국은 본 견해를 출판하고 당사국의 언어로 널리 유포할 것을 요청받습니다.

[함의]

- ‘형식적 사유’로 ‘기회보장’이 박탈된 경우? 실질적 사유(substantive matter)가 아닌 경우 난민심사 기회 미보장은 제7조 위반¹²

- n 1990. 4. 자유권규약 비준 이후로 공항에서 기회보장 박탈된 모든 사람 강제송환금지의무 위반임.

- n 난민법 시행 이후 불회부결정 자체가 ‘집행정지효 있는 불복절차가 없고’, ‘일반적인 상황만으로 판단’하기에 [난민 신청자가 최소 회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출입국항에서 난민 지위 결정 절차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수많은 사례(불회부 결정)에 대해 우려하고, 이러한 관행이 강제송환 금지에 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우려한다.](2023.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에 대한 제5차 심의 최종 견해 para. 45.)

- 공항에서 난민의 대기는 대기가 아니라 ‘구금’이고 ‘자유로운 동의가 아님’ (정당화사유, 근거, 비례성 입증에 안되면 제9조 위반(공항 구금 난민들은 사안에 따라 대부분 자의적 구금으로 포섭됨))

- n 참고.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1항, 제3조 고문등의 금지 위반(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선언한) 재판소 CASE OF Z.A. AND OTHERS v. RUSSIA, Applications nos. 61411/15, 61420/15, 61427/15 and 3028/16, 21 November 2019.

[1] *restitutio in integrum*

[2] 개별적 위험에 대한 정밀한 검토 부족: 출신 국가의 일반적인 상황만으로 판단하거나, 신청자의 구체적인 고문 위험을 묵살한 경우, 실효적 구제수단(**Appeal**)의 부재: 신속 심사 기각 후 즉각 송환되기 전, 집행 정지 효력이 있는 항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제7조 위반을 선언해옴. *S.A. v. Denmark* (No. 2408/2014), *Z.H. v. Australia*, No. 1965/2010,

당사자 발언 (대독)

공항 불법구금 피해자 A

저는 콩고 출신의 난민입니다. 콩고에서의 정치적 탄압을 피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제 난민신청서를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환승객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이기 때문에 난민신청을 할 자격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대로 저는 공항 터미널에 방치되었습니다.

공항 터미널에서 저는 14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터미널에서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터미널 의자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물가가 비싼 터미널에서 식사를 다 사먹어야 했는데, 본국에서 가져온 돈은 금방 떨어졌습니다. 여행객들의 도움으로 식사를 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굶어야 했습니다. 과자와 물만 먹다보니 몸이 아파왔습니다. 제 몸은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변호사들이 전달해주는 진통제를 먹으며 버텨야 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소송에서 이겨서 공항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 난민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저를 공항에 가둔 것의 잘못되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라고 변호사에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잘못 때문에 14개월 동안 공항에 갇혀있었던 저에게, 한국 정부의 어느 누구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상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보상을 해달라는 소송을 했지만, 모두 패소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공항생활은 벗어났지만, 사실 여전히 저는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지내면서 생긴 병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치료비가 부담되어서 그러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완전히 지쳐있습니다.

이번에 유엔에서 좋은 결정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잘못했고, 저에게 보상을 해야한다는 결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말로는, 그렇다고 해도 한국 정부가 실제로 저에게 보상을 할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유도 이해해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지쳐있습니다. 이제라도 한국 정부가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공항에서의 14개월에 대해서 보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Je suis un réfugié originaire du Congo. Je suis venu en Corée pour fuir l'oppression politique dans mon pays. Cependant, le gouvernement coréen a refusé ne serait-ce que d'accepter ma demande d'asile. Sous prétexte que j'étais arrivé à l'aéroport d'Incheon en tant que passager en transit, ils ont prétendu que je n'avais pas le droit de solliciter le statut de réfugié. J'ai donc été abandonné à mon sort dans le terminal de l'aéroport.

Je suis resté bloqué dans ce terminal pendant 14 mois. Vivre dans un aéroport était un enfer quotidien. Je devais dormir sur les sièges de la salle d'attente. Dans ce terminal où tout est extrêmement cher, je devais payer tous mes repas, et l'argent que j'avais apporté de mon pays s'est vite épuisé. Je ne pouvais manger que grâce à la charité des voyageurs ; sinon, je devais rester l'estomac vide. À force de ne consommer que des biscuits et de l'eau, ma

santé a fini par décliner. Mon corps tombait de plus en plus malade. Je ne tenais le coup que grâce aux analgésiques que mes avocats m'apportaient.

Heureusement, j'ai fini par gagner mon procès et j'ai pu quitter l'aéroport. Mes avocats m'ont expliqué que, selon le verdict du tribunal, le gouvernement coréen avait eu tort de refuser ma demande de statut de réfugié et de m'enfermer ainsi à l'aéroport. Pourtant, alors que j'ai été séquestré pendant 14 mois à cause de l'erreur du gouvernement, personne ne m'a présenté d'excuses. Je n'ai reçu aucune indemnisation. J'ai intenté un procès pour obtenir réparation, mais j'ai été débouté à chaque fois. Je ne comprends toujours pas pourquoi.

Même si je ne vis plus à l'aéroport, ma vie quotidienne reste un combat. C'est la conséquence des maladies développées durant mon séjour là-bas. J'aimerais pouvoir me faire soigner correctement à l'hôpital, mais les frais médicaux sont trop lourds à porter pour moi. Je suis totalement épuisé.

On m'a informé que les Nations Unies ont récemment rendu une décision en ma faveur. Elles ont conclu que le gouvernement coréen avait commis une faute et qu'il devait m'indemniser. Mais selon mes avocats, il reste à voir si le gouvernement coréen acceptera réellement de me verser cette compensation. Je ne comprends pas non plus cette incertitude.

Je suis à bout de forces. J'espère qu'enfin, le gouvernement coréen me présentera des excuses sincères et qu'il me dédommagera pour ces 14 mois d'enfer passés à l'aéroport.

출입국항 난민에 대한 비호의 필요성

이상현 (난민인권네트워크 출입국항 워킹그룹, 공익법단체 두루)

한 해 수백명의 난민이 한국의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합니다. 박해를 피해서 본국을 급하게 탈출한 뒤, 한국의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난민신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국내법과 국제법은 이들은 난민으로서 보호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대다수는 입국해서 정식 난민심사를 받을 기회를 받지 못합니다.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을 한 '가짜 난민'으로 낙인찍혀서 송환되거나, 이 사건의 당사자처럼 난민신청서를 접수조차 하지 못합니다.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가 잘못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는 **2013년**에 난민법을 제정할 때 들어온 제도입니다. 이때 국회와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고, 그리고 인권선진국으로서의 국가 품격에 걸맞도록 난민법을 제정한다고 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별도의 난민법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자랑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난민신청을 기회를 보다 넓게 보장하기 위해서, 공항에 도착해서 아직 입국하지 못한 사람도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입니다. 난민신청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라고, 국회 회의록에 똑똑히 써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습니까? 매년 **60~70%**의 공항난민들은 정식 난민심사 기회를 받지 못합니다. 공항에 장기간 구금된 채 출국을 강요받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이러한 공항난민들이 소송만 제기하면, 승소한다는 것입니다. '법치행정'의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맥을 못춥니다. 재판만 가면 연전연패합니다. '국경의 수호자'라고 자부하지만, '법치의 수호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재판에서 법무부가 지는 경우는 **72%**에 달한다고 합니다. 억울한 구금이 **72%**라는 뜻입니다. 행정소송의 평균적인 국가 패소율이 **5~10%**라는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는 유독 다른 행정부처보다 **14배** 자주 오판을 저지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오판을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짜 난민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가짜 법무부가 문제입니까?

오늘 사건의 당사자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법무부의 '가짜 법치행정'에 **420일**을 구금당했습니다.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이런 무도한 행정을 멈추십시오. 한국의 공항도 법이 통하는 곳이 되도록 하십시오.

위법한 구금에 대한 보상과 사과 요구

김진 (난민 행정구금 권리구제단, 공익법단체 두루)

오늘 우리는 인권의 사각지대 인천공항에서 벌어진 위법한 구금에 대해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동시에 한국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실질적인 배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9조 제5항은 “불법 구금의 피해자는 누구나 집행가능한 배상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규약의 유권해석에 해당하는 일반논평은 보다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배상은 실행 가능한 권리여야 하며 호의의 재량의 문제는 아니다. 구제책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해서는 안 되며 효과적으로 이행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배상금 지불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이 제9조 제5항은 단순히 상징적인 구절이 아닌,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국가가 피해자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할 실효적인 구제수단이자 국가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러한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체계는 형사 절차에서의 불법적인 구금은 형사보상법을 두어 보상하고 있지만 출입국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의적인 행정 구금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보상 체계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법한 행정 구금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에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83일간 공항에서 위법하게 구금되었던 난민신청자의 보상 요구에 대해 서울행정법원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사법부는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따르면 배보상의 요건은 구금의 위법성 그 자체이지 공무원의 유책성이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공무원의 과실 유무를 따지는 국내법의 잣대를 앞세워, 위법한 구금 그 자체에 책임을 묻는 국제법상 보상 의무를 외면하였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행정 구금에 대한 보상 법률이 없는 현재의 입법 미비가 위헌은 아니라는 논리로 피해자를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했습니다.

인권의 최우선 가치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면 국가는 그 과실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피해 회복에 나서야 마땅합니다. 정부의 과실이 없다는 핑계로 배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약속한 인권 보호 의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비준한 국제 규약을 준수하고, 인권 선진국으로 책임을 다할 때까지, 법적 근거 없이 난민신청자를 공항에 방치하고 구금한 사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며 행정 구금에 대한 보상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결정의 국내법적 효력과 국가의 이행 의무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법조인들도, 일선 법원에서의 판사들도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착각이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결정이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다는 착각입니다.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유권규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2018년 보충의견을 통해 실시하였듯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지속적으로 자유권규약 등 국제인권조약의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권규약의 최종적 해석이라 볼 수 있는 자유권위원회의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이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국가이고,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여 개인진정(개인통보)제도를 접수하고 심리할 권한을 자유권위원회에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유권위원회는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선출된 전문가로 구성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집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전문가 위원들이 확립된 조약의 해석을 바탕으로 내리는 결정이, 국내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국제법존중주의를 천명한 헌법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유권위원회가 이번 결정에서 확인한 것은 피해자가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와 안전,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입니다. 위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권리로 국제법상 어떠한 경우에도 그 침해가 용납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이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이자, 구금을 집행, 방조한 국가공무원의 법령 위반 또는 인권존중의무 위반이므로 그에 따른 책임을 국가는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자유권위원회는 위 결정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게 “효과적인 구제”를 권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을 배상하라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명예회복, 심리지원, 그리고 책임자 차원에서 공식사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포괄적 배상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적인 구제를 보장할 의무는 엄연한 법적의무입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위 결정에서 180일 이내에 효과적인 구제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에 의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자유권규약을 준수하여 피해자가 훼손된 존엄성과 권리를 빠른 시일 내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

Distr.: General
13 March 2026

Original: English

Advance unedited version

Human Rights Committee

Views adopted by the Committee under the Optional Protocol, concerning communication No. 3742/2020***

<i>Communication submitted by:</i>	Gentilmen Issa Magumba (represented by counsel, Shin Young Chung)
<i>Alleged victim:</i>	The author
<i>State Party:</i>	Republic of Korea
<i>Date of communication:</i>	1 May 2020 (initial submission)
<i>Document references:</i>	Decision taken pursuant to rule 92 of the Committee's rules of procedure, transmitted to the State Party on 26 May 2020 (not issued in document form)
<i>Date of adoption of Views:</i>	13 March 2026
<i>Subject matter:</i>	Risk of deportation to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ue to inability to submit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from the airport transit area
<i>Procedural issues:</i>	Admissibility – lack of substantiation; non-exhaustion of domestic remedies
<i>Substantive issues:</i>	Right to life; freedom from torture o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rbitrary detention; conditions of detention
<i>Articles of the Covenant:</i>	6 (1), 7, 9 (1) and 10 (1)
<i>Articles of the Optional Protocol:</i>	2 and 5 (2) (b)

1.1 The author of the communication is Gentilmen Issa Magumba, a national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RC), born on 10 August 1974. He claims that his rights under articles 6 (1), 7, 9 (1) and 10 (1) of the Covenant were violated. The Optional Protocol entered into force for the State Party on 10 July 1990. The author is represented by counsel.

1.2 On 26 May 2020, the Committee, acting through its Special Rapporteurs on new communications and interim measures, decided to grant interim measures and requested the

* Adopted by the Committee at its 145th session (2–19 March 2026).

** The following members of the Committee participated in the examination of the communication: Tania María Abdo Rocholl, Wafaa Ashraf Moharram Bassim, Rodrigo A. Carazo, Yvonne Donders, Carlos Ramón Fernández Liesa, Laurence R. Helfer, Konstantin Korkelia, Dalia Leinarte, Bacre Waly Ndiaye, Hernán Quezada Cabrera, Akmal Saidov, Ivan Šimonović, Tijana Šurlan, Teraya Koji, Hélène Tigroudja, and Imeru Tamerat Yigezu. Pursuant to rule 108 of the Committee's rules of procedure, Soh Changrok did not participate in the examination of the communication.

State Party to refrain from deporting the author to the DRC while his communication was being considered.

1.3 On 7 September 2020, the State Party requested that the admissibility of the communication be examined separately from the merits. On 11 March 2021, the Committee, acting through its Special Rapporteurs on new communications and interim measures, decided to examine the admissibility of the communication together with its merits and to maintain interim measures. It also requested that the author be removed from the transit zone of the airport, where he was held, and provided with basic accommodation and with access to adequate food and nutrition and appropriate medical care.

Factual background

2.1 The author was a businessman in the DRC. In 2015, the author sent two male co-workers, Abou and Kataweza, to help a business partner. Thereafter, the author learned that Abou and Kataweza were forced to join the Alliance of Democratic Forces – National Army for the Liberation of Uganda (ADF-NALU), a Ugandan-led armed rebel group active in the east of the DRC. Two years later, the author himself was kidnapped and forced to join the ADF-NALU and undergo military training in the forest of Beni. During the training, the author witnessed killings of other people by members of the ADF-NALU under the influence of drugs. He was also forced to dig minerals such as coltan, uranium and tourmaline. The author considered the rebel group as a criminal movement and was able to flee after six months when the ADF-NALU fought against the government.

2.2 When the author returned to his hometown, no one knew that he had been kidnapped by the ADF-NALU. However, since his co-worker Kataweza got killed, Kataweza's family accused him of being a member of the ADF-NALU, burnt his house and killed his twin brother. The author could not report those incidents to the police out of fear that he would be persecuted for joining the ADF-NALU. The author's five children and one nephew had to run away out of fear of the police and people accusing him of being a member of a rebel group. The author lost contact with his children and nephew and does not know their whereabouts.

2.3 The author hid in Virunga National Park for four months. He then managed to leave the DRC with the help of a friend in Indonesia. The author crossed to Rwanda and fled through the Kigali airport for Indonesia. As he suspected that the intelligence agency of the DRC sent its agents to arrest him in Indonesia, he fled to Vietnam and contacted the UNHCR in Hanoi. However, the author was advised to travel to Bangkok for assistance. He instead decided to leave for Palau.

2.4 On 15 February 2020, while on his way to Palau, the author arrived at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n Seoul by Asiana Airline as a transit passenger. He fell asleep and when he woke up, he realized he no longer had his passport and felt he had no more energy to travel further. The author approached the immigration officer at the entry inspection and declared that he wanted to apply for refugee status in the State Party (at 22:48). He was briefly interviewed about the reasons for seeking asylum. The immigration officer took written note of the author's statement and scanned his identification document.¹ The immigration officer also informed him that he was not eligible to apply for refugee status in the State Party as he was a passenger in transit and he did not go through immigration control to enter the country. The author was transferred to an employee from Asiana Airline and was escorted to the transit area of the airport terminal 1. The author has been held in the transit area since. He added that the employees of Asiana Airline tried to force him to exit the transit area and leave the State Party, also with the help of a Congolese diplomat.²

2.5 After the refusal to have his refugee application registered, on 3 March 2020, the author was able to email the UNHCR office in the Republic of Korea to seek assistance. The UNHCR contacted Korean lawyers, who on 31 March 2020, filed a request to cancel the refusal of the author's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at the airport with the Incheon District

¹ No further details were provided about the type of the ID used (other than passport).

² No further details were provided.

Court. The case was pending at the Incheon District Court at the time of submission of the communication.³

2.6 The author primarily claims that the refusal of his refugee application at the border amounts to de facto refoulement, without review of the risk of irreparable harm. Since there has been no precedent of an individual in a similar situation to that of the author, who would have his complaint admitted to the court, despite being outside the State Party's jurisdiction, the author fears that the State Party can remove him anytime from the transit area. Given the absence of legal grounds to prevent the execution of the author's removal from the State Party, the risk of his refoulement is imminent, even if the present case is pending at the Incheon District Court.

2.7 He notes that the State Party has detained the asylum seekers who had their refugee application rejected at the port of entry in the 'deportation waiting room'. He notes that in his case, the State Party has not issued the non-referral decision or repatriation order as he was not even given the opportunity to apply for refugee status at the port of entry and was left in the transit area without assistance or clear timeline for a possible solution. He added that there is no law or policy to review the legality of detention in the transit area.

2.8 On 13 July 2020, after he submitted the communication to the Committee, the author filed an application for *habeas corpus* review to the Incheon District Court, arguing that his stay in the transit area constitutes an "illegally initiated detention" under the Habeas Corpus Act. On 13 April 2021, the author entered the Republic of Korea because of successful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has been staying in its territory on the visa for refugee applicants while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RSD) proceedings were pending.

2.9 However, at the time of submission, the author claimed that he had exhausted available domestic remedies, arguing that since the administrative asylum procedure, and related administrative court proceedings, are unreasonably prolonged, there is no need to exhaust such remedy.⁴ He also refers to Committee's jurisprudence and states that he does not need to exhaust the remedies that are unlikely to succeed.⁵ The same matter has not been submitted to another procedure of international investigation or settlement.

Complaint

3.1 The author claims that the State Party's refusal to accept his refugee application on 15 February 2020 at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without a review of the risk of irreparable harm, constitutes a violation of his rights under articles 6 and 7 of the Covenant, if he were to be removed.⁶ Such refusal would lead to his de facto refoulement, in violation of article 7 of the Covenant, to the DRC where he has been accused of being a member and a recruiter of a rebel group, and under threats of the authorities and the family of his co-worker Kataweza. He claims to have established he faced a real risk of irreparable harm.⁷

3.2 Under Korean law, refugee application can be made at the port of entry. When a foreigner makes refugee application at the port of entry, the application is subject to the assessment of the admissibility of the case instead of the full examination of the substantive claim. In order to ensure the non-refoulement of asylum seekers, the State Party should have a due procedure to review a risk of irreparable harm under articles 6 and 7 of the Covenant regardless of the place of application. The only ground for the State Party to refuse the refugee application of the author was that he was not a foreigner 'undergoing an entry inspection' but a mere transit passenger. The State Party interpreted article 6 of the Refugee Act literally that only a foreigner 'undergoing an entry inspection' is entitled to apply for refugee status at the port of entry.

³ The pending court case is to request the State Party's immigration to accept the refugee application, which would require further legal proceedings after the decision is made. If the author's case were allowed, he would be able to submit the refugee application and the State Party will conduct the initial assessment of the case.

⁴ *Coronel et al. v. Colombia* (CCPR/C/76/D/778/1997), para. 6.2.

⁵ *Thompson v. Panama* (CCPR/C/52/D/438/1990), para. 5.2.

⁶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31, para. 12.

⁷ *Warda Osman Jasin v. Denmark* (CCPR/C/114/D/2360/2014), para. 8.3.

3.3 The author argued that confinement to a restricted area of an airport including the transit area amounts to deprivation of liberty under article 9 of the Covenant.⁸ The author thus contends that by detaining him in the transit zone of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without legal ground, since no administrative order has been issued; for indefinite period and without a possibility of reviewing the legality of his detention in the transit area, his rights under article 9(1) of the Covenant have been violated.

3.4 The author adds that he is not in the transit area voluntarily since he has no choice of leaving the State party⁹ as he would be subject to torture or other ill-treatment in the DRC. Furthermore, as the Covid-19 pandemic persists, more countries enforce entry ban on individuals who have stayed in the State Party; the author cannot travel to other countries. He has been held in the transit area since 15 February 2020. He added that no independent review mechanisms exist to determine the legality of the prolonged detention, asserting that a release request according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Liberty Act¹⁰ is not likely to succeed as no precedent decision was rendered to serve those detained in the transit area in the airport.

3.5 Furthermore, the author claims to have been held in inhumane conditions and facing inhumane treatment in the transit area, as he has no privacy, limited access to medical services and is forced to live under constant lighting. In addition, he was held without any protection measures amid the COVID-19 pandemic, which amounts to life threatening situation due to a higher risk of Covid-19 infection. Therefore, the State Party violated the author's rights under articles 6 (1), 7 and 10 (1) of the Covenant.

State Party's observations on admissibility

4.1 On 7 September 2020, the State Party objected to the admissibility of the communication, requesting that the admissibility be examined separately from the merits. First, the State Party asserted as to the factual background that the author had expressed his intent of seeking asylum only on 18 February 2020 to an airport security guard. On 31 March 2020, the author filed a case requesting the Incheon District Court to cancel the State Party's refusal of his refugee application. The Incheon District Court in its ruling of 4 June 2020 stated that there is no sufficient ground or evidence to recognize that the author expressed an intent to apply for refugee status at the immigration desk in the airport or that the State Party refused receipt of such application. However, the Court ruled in favour of the author, citing the Refugee Act (art. 5 (4)) which stipulates that "an immigration control official shall positively help foreigners who inquire about applying for refugee status or express their will to apply therefor." The State Party appealed and the case was pending before the Seoul High Court. After submitting the complaint to the Committee, on 13 July 2020, the author filed an application for *habeas corpus* review to the Incheon District Court, arguing that his stay at the transit area constituted an "illegally initiated detention" under the Habeas Corpus Act. This case was under review in the Incheon District Court at the time. The State Party argued that the author failed to exhaust available domestic remedies since the proceedings concerning his asylum request were pending before the Seoul High Court, and in the Incheon District Court as concerned his *habeas corpus* application. The State Party also considered the author's claims as not substantiated, arguing that there was no unjustifiable or unreasonable delay in the length of judicial proceedings.

4.2 Subsequently, the State Party attested that the author continued to be kept in the transit area of the airport, where he could use various facilities including medical treatment. His *habeas corpus* application was dismissed by the Incheon District Court on 19 November 2020. The court stated that the author was not a detainee but had been staying in the transit area as he was not allowed to enter the State Party. The author appealed the decision, and the case was pending at the Incheon High Court at the time.

Author's comments on admissibility

⁸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35 (CCPR/C/GC/35), para. 5, in which a reference is made to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n Belgium (CCPR/CO/81/BEL, 2004), para. 17 (detention of migrants pending expulsion). See also the UNHCR, Revised Guidelines on Applicable Criteria and Standards Relating to the Detention of Asylum Seekers (1999).

⁹ In *Amuur v. Franc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s rejected the argument that the persons seeking asylum could have left transit zone, which was 'closed on inner side' but remained 'open to outside' as no country was offering protection to the asylum seekers.

¹⁰ *Habeas corpus* application.

5.1 On 14 December 2020, the author submitted his comments on the State Party's observations on admissibility, objecting to the allegations of non-exhaustion of domestic remedies as the relevant procedures were unreasonably prolonged and unlikely to succeed. He corrected some inconsistencies in his accounts of facts due to his physical and mental strains, arguing that the State Party failed to provide him with adequate means of subsistence by keeping him in the transit zone. He lived on cash donated by the counsels' acquaintances to buy food, and on food occasionally given by the passengers in the transit area. Despite indication that lounges, showers and free internet kiosks are available in the transit area, the author noted that the shower facility was closed after the breakout of COVID-19 and that he was allowed to use the facility only once a week. As regards the author's detention in the transit area, the Incheon District Court dismissed his *habeas corpus application* on 19 November 2020 as it did not consider the author a detainee. The author appealed the decision, and the case was pending at the Incheon High Court. In view of the author, it was not clear how long the judicial procedure would last, and whether he would be allowed to leave the transit area unless he would win the litigation to cancel the rejection of the non-referral decision on his refugee application.

5.2 The author's health conditions further deteriorated and, although he was sent to the hospital at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he received painkillers without proper examination and diagnosis. By failing to provide him with access to food, decent accommodation and proper medical treatment, the State Party has violated his right to life.

5.3 As for the author's eligibility to apply for refugee status, the Incheon District Court in its ruling of 4 June 2020 found that the author clearly expressed his intent to apply for refugee status since 18 February 2020. The author reiterated that the State Party was thus obliged to take measures under article 6 of the Refugee Act, such as assisting the author to write and submit the refugee application form and pursue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RSD) procedure. The court concluded that the State Party's omission to assist the author has amounted to a violation of article 6 of the Refugee Act. The State Party appealed against the court's ruling, insisting that the author was not entitled to apply for refugee status since he was a mere transit passenger.

State Party's observations on admissibility and the merits

6.1 In its 6 July 2022 submission, the State Party argued that the communication should be considered inadmissible, or without merit.

6.2 On the admissibility, the State Party recalled that the author has not exhausted all available domestic remedies. Moreover, the application of domestic remedies was not unreasonably delayed or ineffective. The State Party noted that while in the transit area, the author filed on 31 March 2020 a request to the Incheon District Court "to cancel the Government's refusal of his refugee application and recognize that the non-initiation of the RSD procedure at the port of entry was unlawful".

6.3 The author entered the Republic of Korea because of successful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he has been staying in its territory on the visa for refugee applicants while the RSD proceedings were pending. The rights of the author were therefore upheld by the domestic judicial procedures.

6.4 As to the merits, the State Party opposed as unreasonable the author's arguments that the rejection of his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at the border by its immigration authorities constituted a forced expulsion or de facto refoulement of the author, in violation of articles 6 (1) and 7 of the Covenant. The State Party also noted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that the author would be repatriated against his will during the RSD procedure, pursuant to article 62 (4) of the Immigration Act.

6.5 Regarding article 9 claims, the State Party held that the author was not deprived of his liberty upon arrival at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on 15 February 2020 as he could secure a seat on a departing flight of Asiana Airline to Palau. Although the author could have freely left the transit area at any time, he decided to remain there due to his will to enter the State Party. There was hence no act of "arbitrary arrest or detention" or "deprivation of liberty" and the State Party complied with its obligations under article 9 (1) of the Covenant. Finally, the State Party asserted that the author was provided, when in transit, with emergency medical

services and was granted access to legal counsel,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 (1) of the Covenant.

Author's comments on the State Party's observations on admissibility and the merits

7.1 On 7 November 2022, the author submitted his comments on the State Party's observations of 6 July 2022.

7.2 The author noted that he was released from the transit area on 13 April 2021, pursuant to the order by the Incheon District Court, as confirmed by the Incheon High Court. On 24 May 2021, the State Party accepted the author's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following the decision from the Seoul High Court of 21 April 2021, which found that the decision of the immigration authorities not to accept the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from the author was unlawful. As of November 2022, there has been no progress in the RSD procedure in the author's case. He continued to live in the State Party on a temporary visa. The author has been struggling to survive as his work-contracts have constantly been terminated due to his health condition,¹¹ having to rely on charity activities since without regular income or social support.

7.3 Regarding the detention of the author in the transit area, the State Party should have released him as soon as possible; and at least after the 4 June 2020 Incheon District Court finding that the authorities' refusal to accept the author's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was unlawful. The author was released from the airport transit area only after the interim measures request to release him, issued by the Incheon High Court on 13 April 2021. Such delay in remedial procedure has not been justified and should be considered unreasonable. As concerns the implications for the right to life, the author faced life threatening difficulties during his stay in the airport transit zone for 14 months, without a remedy. While he could have sought compensation from the State Party, he was afraid of the possible repercussions for doing so during the RSD procedure. He therefore considered the compensation claim not to be an available remedy.

7.4 In addition, the author considered the State Party's objections to his claims under articles 6 (1) and 7 (para. 3.2 above) as misleading; however, he admitted that the State Party has exercised discretion over the RSD procedure and the right to regulate entry and stay of the aliens. In this case, the State Party did not allow the author to apply for refugee status just because he was a transit passenger. Without specific legal provisions to ensure an effective and independent review of the decisions over the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at the border, the rejected asylum seekers are deprived of the right of non-refoulement, in violation of the Covenant.¹²

7.5 As regards the objections to the alleged violations of article 9 (1), the author considers that the State Party's arguments are based on the legal fiction that the asylum seeker can freely leave the transit zone and the State Party and go to any other country. The author refers to the Committee's case-law that any decision to keep a person in detention should be subject to a period review so that the grounds justifying detention can be assessed; the detention should not continue beyond the period for which the State can provide appropriate justification. The author submits that while there was not an affirmative decision to detain him in a specific place, it was the administrative power of the State Party that deprived the author of liberty by not allowing him to leave the transit area during the judicial proceedings from February 2020 to April 2021. Without legislative measures prohibiting detention in the transit area of the asylum seekers rejected at the border, the State Party continues to practice de facto arbitrary detention of the rejected asylum seekers, thereby violating article 9 (1) of the Covenant.

7.6 As for the claims of violations of articles 6 (1), 7 and 10 (1), the author notes that the State Party held that since the author was not formally detained, it had no obligations towards him in the transit area, which was equipped with appropriate facilities. The author objected, noting that he was destitute and could not afford the high prices of goods and services in the transit area. He also objected to the way in which the State Party qualified the fact that he was provided a separate room for interview with the legal counsels on eight occasions within 14 months as "humanitarian". He contends that asylum seekers are entitled to the right to

¹¹ The author has generally referred to the chronic pains in the lower parts of his body, which prevented him from working efficiently.

¹² *Alzery v. Sweden* (CCPR/C/88/D/1416/2005), para. 11.8.

counsel and the provision of room for meetings with the counsels is a legal requirement, not a humanitarian gesture. The Covenant requires from the State Party a heightened duty of care to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otect the lives of individuals deprived of their liberty by the State.¹³ However, the State Party failed to take any measures to protect the author from the Covid-19 pandemic. The author reiterated that his life in the transit area was sustained by donated goods, including the food, face masks, soap and medicines. The author also had difficulty to keep hygiene as the shower facility was clos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he lacked access to medical services. Without adequate measures to sustain the author's life in the transit area, the State Party violated its obligations under articles 6 (1), 7 and 10 (1) of the Covenant, breaching the duty of care towards the author.

7.7 The author recalls that he forcibly left his home in 2017 after having been kidnapped and he had no safe place to return to and that he was left without legal protection or remedies for over 33 months.

State Party's further observations

8.1 On 1 February 2023, the State Party submitted that although the RSD procedure in the author's case was still pending, it nevertheless represents an available domestic remedy that has neither been unreasonably prolonged nor ineffective. However, the State Party recognized its comparatively low refugee recognition rates, and in acknowledging the criticism regarding the time-consuming nature of the RSD procedures, it has taken various measures to address the issue, including by increasing the number of RSD officers and improving the procedural fairness of RSD interviews.

8.2 As for the author's extended stay in the airport transit area, the State Party objected to the author's allegations of undue delays, recalling that he exited the transit area on 13 April 2021 and entered the State Party's territory, after a successful administrative litigation before the court. If the author suffered damages due to the Government's actions causing alleged infringements of his right to life, he could seek a judicial remedy e.g. by filing a claim for compensation.

8.3 The State Party contends that, notwithstanding the author's pending refugee application since 24 May 2021, and except for compensation claim, all other remedies sought initially by the author have either been satisfied through domestic procedures or have become moot. Since the author has not attempted to exhaust the compensation claim, his communication should be declared inadmissible.

8.4 The State Party also submitted observations on the author's comments on the merits, informing about the policy reform of the applications for refugee status in the transit areas, outlining the Seoul High Court's interpretation of the Refugee Act so that airport transit passengers may also apply for refugee status.¹⁴ The Government revised the *Refugee Policy Manual* so that if an airport transit passenger expresses their intention to enter the Republic of Korea and apply for refugee status, they should be transferred to relevant public officials for further processing "without delay". The State Party also mentioned the improvements in the airport waiting areas for foreigners denied entry.

Author's additional comments

9.1 On 8 June 2023, the author submitted additional comments indicating that his refugee application has been pending at the first stage for over 39 months since he arrived in the State Party to seek protection and he was not interviewed by the RSD officers as of June 2023. The author could not work due to his health status, and he was not entitled as a refugee seeker to any social security services. He was left destitute without any protection from the State Party.

9.2 The author reiterated his arguments about the lack of effectiveness of the pending RSD procedure, which even once concluded would not have addressed neither compensation in relation to his detention in the airport transit area nor the merits of his claims, including the alleged violations of the right to life. He informed that he filed the compensation claim on 24 April 2023 due to his detention in the transit area.

¹³ General comment no. 36 (CCPR/C/GC/36), para. 25.

¹⁴ On 21 April 2021, the Seoul High Court held (decision 2020Nu45348) that foreigners who enter the transit areas, which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ave a right to seek asylum according to article 6 of the Refugee Act.

9.3 The author also noted the State Party's efforts to improve the conditions in the airport transit area to prevent similar cases, pursuant to the High Court's decision of 21 April 2021, and allowing the transit passengers in the airport to seek asylum and by processing their application without delay.

State Party's additional observations

10.1 On 17 November 2023, the State Party submitted additional observations on admissibility and the merits, reiterating its argument of the lack of exhaustion of domestic remedies.

10.2 While the author pursued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RSD) procedure, there is no evidence that it has been unreasonably prolonged or ineffective. The author also filed a compensation claim against the State on 24 April 2023. The domestic remedies have proven effective and timely, and the communication should be considered inadmissible.

10.3 As for the alleged unreasonable delays in recognizing the author as a refugee, in June 2023, the authorities summoned the author on two occasions, but he did not attend the scheduled appointments without notice and could not be reached. On 3 August, the authorities conducted the interview. On 29 August 2023, the author's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was rejected, and he did not qualify for humanitarian status either. On the same day, the author appealed the negative decision to the Minister of Justice. The appeal procedure was ongoing as of October 2023. His appeal to the Minister proves that the available domestic remedies have not been exhausted. Therefore, the author's criticism that the RSD procedure has been unreasonably delayed is unfounded.

10.4 As for the criticism that the RSD procedure is ineffective due to the low refugee recognition rate, the data shows that the RSD procedure is effective, and the appeals are guaranteed.

10.5 The State Party rejected again that it had arbitrarily detained the author as a foreign national in the airport transit area. Its Refugee Act operates two distinct refugee application systems: a (general) RSD system for foreigners residing in the country and a port-of-entry RSD system for those arriving, in line with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51). When a foreign national arriving at a port of entry seeks a refugee status but is denied protection, the individual has the option to return to their home country, go to a third country, or stay at the port of entry and challenge the decision through judicial procedures. If the authorities reject an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an individual is denied entry and not permitted to leave the airport. Even if he/she opposes a repatriation to a foreign country,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personal liberty. An individual can freely navigate the departure and transit areas of the airport and determine the duration of stay at the airport based on their own preferences.

10.6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erminal covers a large area requiring a 50-minute walk, and individuals are no longer confined to a limited space like the departure waiting area inside the terminal, enjoying the freedom to move around. The author's claim that the current departure waiting area is a facility where he can be involuntarily detained indefinitely is not accurate.

10.7 The State Party also objected to the alleged infringement of the author's right to life, due to the cited absence of remedies and unreasonable prolongation of the RSD procedure, leading to deprivation of his livelihood. It noted that article 40 of the Refugee Act allows a refugee applicant to apply for a living allowance. The author has never submitted such an application and has never applied for a work permit either. Moreover, the author applied for medical expenses once in March 2023, which was denied as the amount requested was too small for a required threshold. Prior to that, the author received medical treatment on 7 July 2020 during his stay in the airport transit area, and the medical record stated that the urgency was not proven. The State Party held that the author's claim that the Government's failure to provide social assistance has rendered him destitute, constituting an infringement of his right to life, has not been substantiated. The State Party concluded that there was no violation of articles 6 (1), 7, 9 (1) and 10 (1) of the Covenant.

10.8 As regards the allegations of poor conditions in the departure waiting area at the airport, the State Party objected that such claims go beyond the scope of the Committee's examination and are factually untrue. However, the Government has made improvement plans in anticipation of similar cases in the future. It opposed the cited difficulties in obtaining

food in the airport transit area due to financial constraints, including having to rely on food provided by passing passengers. Since August 2022, when the management of the departure waiting areas shifted to the government, meals have been provided from public budget. As regards the quality, the State Party added that breakfast is served as a snack, and lunch and dinner are provided the same as in-flight meals on international flights. The claims of poor quality should be deemed inappropriate.

10.9 As to the claims that “medical services are largely unavailable” in the departure waiting area, the State Party submitted that basic medicines are available on-site, and in 2022,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paramedics addressed 23 cases of minor illnesses, and 12 cases received outpatient treatment outside the airport.

10.10 As regards the criticism of the draft law establishing the departure waiting centre, outside ports of entry, the author held that the operation of such a centre may lead to indefinite detention of applicants for refugee status. The State Party noted that the draft law, which was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on 15 December 2022 and was pending at the time, cannot be considered as allowing arbitrary detention as its aim is to bring improvements in living conditions and rights for those who stay in the airport for a longer period, including the cited concerns regarding the limitations on meals and personal items.

Author’s additional comments

11. On 2 June 2025, the author submitted an update on the status of the RSD procedure, noting *inter alia* that his refugee application was rejected by the Incheon Immigration Office on 29 August 2023 and the appeal against the negative decision was rejec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on 24 November 2023. Subsequently, the author filed an administrative lawsuit at the Incheon District Court, seeking to revoke the non-recognition of his refugee status, but the court dismissed the author’s claim on 26 July 2024. The author also filed a civil claim for compensation of damages under article 2 (1)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arguing that public officers unlawfully restricted his liberty by leaving him stranded for 14 months in the airport transit zone, without access to asylum procedures. The Court dismissed the author’s claim for compensation on 19 June 2024.

Issues and proceedings before the Committee

Consideration of admissibility

12.1 Before considering any claims contained in a communication, the Committee must decide, in accordance with rule 97 of its rules of procedure, whether the communication is admissible under the Optional Protocol.

12.2 The Committee has ascertained, as required under article 5 (2) (a) of the Optional Protocol, that the same matter is not being examined under another procedure of international investigation or settlement.

12.3 The Committee notes the State Party’s argument that the author has not exhausted all available domestic remedies. It contends that the author’s application for revocation was pending at the time of submission of the communication to the Committee (paras. 4.1, 6.1 and 10.2. above), that his subsequent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and the RSD procedure also remained pending (paras. 7.2 and 8.2), and that the proceedings were not unreasonably prolonged (para. 10.2). The State Party added that the Incheon District Court on 4 June 2020 and the Seoul High Court on 21 April 2021 ruled in the author’s favour, that the judicial remedies proved effective as the author exited the airport transit area on 13 April 2021 and entered the State Party’s territory (para. 8.3 above), and that the author’s claims have been resolved or become moot. The Committee further notes the State Party’s assertions that the author only submitted a claim for compensation on 24 April 2023, while his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of 24 May 2021 was rejected on 29 August 2023, and that his appeal against the negative decision on his refugee application was pending before the Minister of Justice in October 2023 (para. 10.3 above).

12.4 The Committee further notes the author’s claim that he has exhausted available domestic remedies, while he primarily held that the remedial procedures have been unreasonably prolonged and unlikely to succeed. The author in particular argued that: (a) the rejection of the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at the border was not subject to appeal; (b) on 31 March 2020, he filed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t the Incheon District Court to request the revocation of refusal of his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at the border, which ruled in the

author's favour on 4 June 2020, finding that the author should have been entitled to submit a refugee application even as transit passenger; (c) since the Government appealed against the Incheon District Court finding, the proceedings were protracted and extended the author's transit detention for 14 months until the Seoul High Court confirmed the author's claims for revocation of rejection of his refugee application on 21 April 2021, after the author's release from the airport transit area on 13 April 2021 pursuant to the Incheon High Court order; (d) on 13 July 2020, the author filed *habeas corpus* application, which was rejected by the Incheon District Court on 19 November 2020; and (e) the author's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of 24 May 2021 was rejected on 29 August 2023, his appeal against the negative decision was rejected by the Minister on 24 November 2023, and the appeal before the Incheon High Court has remained pending.

12.5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author's main claims relate to the absence of access to refugee applications for those in transit, who have not entered the State Party's territory; the absence of opportunity to submit an appeal against the rejection of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at the border; the legal uncertainty about his rights, while held in the transit zone of the airport, to request a revocation by a court of rejection of his refugee application, noting also the alleged lack of judicial precedent. The Committee observes the author's additional claim that he demonstrated due diligence by pursuing also civil remedies, but the compensation proceedings have been inefficient as his claim for compensation of 24 April 2023 was rejected on 19 June 2024 (para. 11 above).

12.6 The Committee recalls its jurisprudence that authors are obliged to exhaust all domestic remedies insofar as such remedies appear to be effective in the given case and are de facto available to the author,¹⁵ and that domestic remedies are not considered effective where their application is unreasonably prolonged.¹⁶ In addition, the Committee recalls its long-standing jurisprudence according to which, when examining complaints, the determination of the exhaustion of domestic remedies is made with reference to the time a communication is being examined.¹⁷

12.7 In this case, the Committee takes note of the State Party's argument that the author submitted a request for revocation on 31 March 2020, and that he had been gradually using the available domestic remedies following the submission of his initial communication on 1 May 2020 (para. 4.1 above). However,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author made all reasonable attempts to remedy the alleged violations at the domestic level, in particular as the author was in the airport transit area in a situation of legal uncertainty as to his status and rights, and while fearing a risk of refoulement at any point, in the absence of automatic suspensive effect of the administrative court litigation. In addition, the Committee observes that the author did not have access to an appeal procedure to contest the rejection of his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at the border, and could only file an administrative court application for revocation of the rejection of his refugee application on which the courts ruled in the author's favour on 4 June 2020 and 21 April 2021 (see paras. 2.5-2.6 and fn. 4 above). The Committee also observes that the author's asylum application, which was eventually accepted by the State Party on 24 May 2021, had no suspensive effect on the author's eventual removal pending the RSD procedure. Moreover, it has not been satisfactorily resolved for over 2 years, involving delays in interviews, and the refugee application was rejected on 29 August 2023, and on appeal on 24 November 2023, and the appeal against the negative decision of the Incheon District Court of 26 July 2024 has been pending before the Incheon High Court, in the context of administrative lawsuit (para. 11. above). In parallel, the author's civil compensation claim was denied on 19 June 2024.

12.8 In light of the above,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the relevant domestic remedies have been either unavailable (e.g. due to absence of appeal against the rejection of refugee application by transit passenger), unreasonably prolonged (e.g. as administrative court litigation for revocation of rejection is followed by RSD procedure) or partially effective (e.g. due to delays of RSD procedure, as admitted, and its absence of suspensive effect, in combination with low recognition rates of asylum applications, and as the *habeas corpus*

¹⁵ E.g. *Urszula Saad v. Libya* (CCPR/C/143/D/3324/2019), para. 7.4.

¹⁶ See, e.g., *Rajapakse v. Sri Lanka* (CCPR/C/87/D/1250/2004), paras. 9.4-9.5; *Sendic v. Uruguay* (CCPR/C/14/D/63/1979), para. 17; and *Del Cid Gómez v. Panama* (CCPR/C/54/D/473/1991), para. 5.1.

¹⁷ See *Luiz Inácio Lula da Silva v. Brazil* (CCPR/C/134/D/2841/2016 – Final proceedings), paras. 7.4–7.5.

application and compensation claim proceedings turned ineffective in this case).¹⁸ The Committee therefore concludes that it is not precluded from considering the author's claims by the requirements of article 5 (2) (b) of the Optional Protocol.

12.9 As regards access to asylum,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author's refugee application, eventually accepted in May 2021, was considered and rejected by the national asylum authorities in 2023, and that the author did not submit information on any procedural irregularities or arbitrariness of his asylum proceedings.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the author's allegations under articles 6 (1) and 7, as they were considered by the State Party at that time, that he would face a personal and real risk of irreparable harm, if removed to the DRC, in violation of his rights under the Covenant (substantive elements of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have not been sufficiently substantiated before the Committee as to the risks of irreparable harm, and therefore declares them inadmissible, pursuant to article 2 of the Optional Protocol. Furthermore,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the author's claims under articles 6 (1) and 7, in the context of his claims under article 10 of the Covenant, have not been sufficiently substantiated as to the eventual aggravating risks for his life and dignified treatment, on account of the conditions of detention, and therefore finds them inadmissible, pursuant to article 2 of the Optional Protocol.

12.10 The Committee, however, considers that the author's claim under article 7, concerning the impossibility for the author to submit a refugee application while he was in the airport transit area and did not go through an immigration entry inspection, and his claims under articles 9 (1) and 10 (1) have been sufficiently substantiated for the purposes of admissibility. It therefore declares those claims admissible and proceeds to their consideration on the merits.

Consideration of the merits

13.1 The Committee has considered the communication in the light of all the information made available to it by the parties, as provided for under article 5 (1) of the Optional Protocol.

13.2 As regards article 7 of the Covenant, the Committee notes the author's claim that his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at the port of entry of the State Party was immediately rejected and not processed, without due consideration of the risk of irreparable harm he would face if he were to be removed.¹⁹ The Committee notes the State Party's argument that under article 6 of the Refugee Act, a foreigner can only submit a refugee application at the port of entry, not in the airport transit area. In accordance with its interpretation of article 6 of the Refugee Act, the State Party contends that only a foreigner 'undergoing an entry inspection' is entitled to apply for refugee status at the port of entry. The author objected, however, that the State Party's non-refoulement obligation should not be limited to asylum seekers who are 'undergoing an entry inspection', but extend to every individual in the State Party's territory. Furthermore, the Committee observes that on 31 March 2020 the author applied for revocation of the refusal for processing of his refugee application, and that the Incheon District Court and the Seoul High Court ruled in the author's favour, on 4 June 2020 and 21 April 2021 respectively, finding that the transit passengers should also be entitled to the right to asylum, pursuant to article 6 of the Refugee Act, as the airport transit areas ar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Party (para. 8.4). The Committee notes the subsequent draft State Party's legislative amendments and changes of policies.

13.3 The Committee recalls its general comment No. 31 (2004) on the nature of the general legal obligation imposed on States Parties to the Covenant, in which it referred to the obligation of States Parties not to extradite, deport, expel or otherwise remove a person from their territory when there were substantial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re was a real risk of irreparable harm such as that contemplated by articles 6 and 7 of the Covenant.²⁰ The Committee also recalls that there must be an opportunity for effective, independent review of the decision to expel an individual, with suspensive effect, if there are arguable claims under article 7 of the Covenant.²¹

13.4 In the present case, the Committee observes that the only ground for the State Party to refuse for processing the author's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was that he was not a

¹⁸ E.g. *A.B. and B.D. v. Poland* (CCPR/C/135/D/3017/2017), para. 8.3.

¹⁹ *A.B. and B.D. v. Poland*, para. 9.2.

²⁰ General comment No. 31 (2004) on the nature of the general legal obligation imposed on States parties to the Covenant, para. 12.

²¹ See also *A.B. and B.D. v. Poland*, para. 9.5. See also fn. 32 (above).

foreigner ‘undergoing an entry inspection’, pursuant to article 6 (1) of the Refugee Act. While recognizing that the obligations under the Refugee Convention (1951) ratified by the State Party are implemented through the national legislation of its States Parties,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the national laws must observe in parallel the obligations under the human rights law, including the Covenant. In view of the above,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the author was denied his right to seek asylum as of 15 February 2020 for the mere fact that he was a transit passenger, and not at the port-of-entry, i.e. the State Party’s border or territory. The Committee therefore finds that the author was deprived of the opportunity to seek protection from refoulement to the DRC, since his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was rejected on formal grounds. The Committee therefore concludes that the State Party violated the author’s rights under article 7 of the Covenant.²²

13.5 As concerns article 9 (1), the Committee notes the author’s claim that once the State Party’s immigration authorities refused to accept his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the author was detained since 15 February 2020 in the transit area of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without legal ground as no administrative order has been issued; and for indefinite period and without a possibility of review of the legality of his detention in the transit area. The Committee notes the State Party’s argument that the foreigners whose applications for refugee status were refused for processing at the border are free to leave the State Party; that if they decline leaving the territory, they are obliged to remain in the airport premises but they can move freely in the departure and transit areas, and that the State Party’s authorities did not issue any decision imposing detention on the author in the airport transit area. The Committee also observes that while the author filed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he was obliged to await the outcomes of the judicial proceedings in the transit area for 14 months, until he was released on 13 April 2021, considering also the rulings of the Incheon District Court on 4 June 2020, and of the Incheon High Court on 21 April 2021.

13.6 The Committee recalls its jurisprudence that the deprivation of liberty involves more severe restriction of motion within a narrower space, including confinement to a restricted area of an airport,²³ and such deprivation of personal liberty is without free consent.²⁴ The Committee also observes that the detention of refugees for lengthy and indefinite periods can be arbitrary.²⁵ In the present case,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it is not disputed by the State Party that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ransit area falls under its jurisdiction.²⁶ The Committee also notes the author’s claim that he was subjected to de facto detention for 14 months in this transit area, without possibility to exit the airport in other way than leaving the State Party, and that his *habeas corpus* application turned ineffective and he secured his release from the transit area only through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the alternative. The Committee therefore finds that the author was detained in the airport transit area without legal ground, as no administrative order was issued against him; and for indefinite period and without appropriate justification, as the author did not know from the outset for how long he would be deprived of his liberty; and without establishing proportionality or necessity of such measure, as he was de facto expected to leave the transit area for another country, which has amounted to arbitrariness in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thereby violating his rights under article 9 (1) of the Covenant.

13.7 Regarding article 10 (1), the Committee notes the author’s assertion that he was detained in inhumane and insanitary conditions in the transit area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that he was held without any protection measures amid the COVID-19 pandemic. It also notes the State Party’s objection that the author was provided with food, accommodation, access to medical care, sanitary facilities as well as legal counselling (paras. 6.5, 7.7 and 10.8 above). The Committee, however, observes that the author was expos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o insanitary conditions, lack of sufficient accommodation, adequate food and medicines and non-stop light for 24 hours, until he was released on 13

²² *A.B. and B.D. v. Poland*, para. 9.5 (read in conjunction with art. 2 (3) of the Covenant).

²³ General comment No. 35 (Article 9), CCPR/C/GC/35, para. 5.

²⁴ *Ibid.*, para. 6.

²⁵ *Bakhtiyari et al. v. Australia*, para. 9.3, and *Tran v. Australia* (CCPR/C/143/D/3665/2019), para. 10.4. See also ECtHR, *Z.A. and Others v. Russia* (Applications nos. 61411/15, 61420/15, 61427/15 and 3028/16), Grand Chamber judgement of 21 November 2019, paras. 164-171, and 187-197.

²⁶ ECtHR, *Z.A. and Others v. Russia* (Applications nos. 61411/15, 61420/15, 61427/15 and 3028/16), Grand Chamber judgement of 21 November 2019, paras. 129-134.

April 2021.²⁷ The Committee finds that the author's rights under article 10 (1) of the Covenant have been violated.

14. The Human Rights Committee, acting under article 5 (4) of the Optional Protocol, is of the view that the State Party has violated the author's rights under articles 7, 9 (1) and 10 (1) of the Covenant.

15.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3) (a) of the Covenant, the State Party is under an obligation to provide the author with an effective remedy. This requires it to make full reparation to individuals whose Covenant rights have been violated. Accordingly, the State Party is obligated to provide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the material and moral harm suffered by the author. The State Party is also under an obligation to take all steps necessary to prevent similar violations from occurring in the future.

16. Bearing in mind that, by becoming a Party to the Optional Protocol, the State Party has recognized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to determine whether there has been a violation of the Covenant and that, pursuant to article 2 of the Covenant, the State Party has undertaken to ensure to all individuals within its territory and subject to its jurisdiction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Covenant and to provide an effective remedy when it has been determined that a violation has occurred, the Committee wishes to receive from the State Party, within 180 days, information about the measures taken to give effect to the Committee's Views. The State Party is also requested to publish the present Views and to have them widely disseminated in the language of the State Party.

²⁷ General comment No. 21: Article 10 (Humane treatment of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para. 3, re. safeguards for individuals in vulnerable situations.

사전 미편집본(Advance unedited version)

배포: 일반, 2026 년 3 월 13 일

원문: 영어

자유권규약 위원회 개인통보 제 3742/2020 호에 관하여 선택의정서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견해(Views)

- 통보 제출자: ----- (대리인: 정신영 변호사)
- 피해 주장자: 통보인 본인
- 당사국: 대한민국
- 통보 접수일: 2020 년 5 월 1 일 (최초 제출)
- 문서 참조: 위원회 의사규칙 제 92 조에 따라 내려진 결정, 2020 년 5 월 26 일 당사국에 송부됨(문서 형태로 발행되지 않음)
- 견해 채택일: 2026 년 3 월 13 일
- 주제: 공항 환송구역에서 난민 지위 신청 불가로 인한 콩고민주공화국 송환 위험
- 절차적 쟁점: 허용 가능성 - 증거 불충분; 국내 구제 절차 미진행
- 실체적 쟁점: 생명권;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자의적 구금; 구금 조건
- 규약 조항: 제 6 조(1), 제 7 조, 제 9 조(1) 및 제 10 조(1)
- 선택의정서 조항: 제 2 조 및 제 5 조(2)(b)

1.1 본 통보의 제출자는 1974 년 8 월 10 일생인 콩고민주공화국(DRC) 국적의 젠틀멘 이사 마굼바입니다. 그는 규약 제 6 조(1), 제 7 조, 제 9 조(1) 및 제 10 조(1)에 따른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선택의정서는 1990 년 7 월 10 일 당사국에 대해 발효되었습니다. 통보인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2020 년 5 월 26 일, 위원회는 신규 통보 및 잠정 조치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통해 잠정 조치를 승인하기로 결정하고, 통보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통보인을 DRC 로 송환하는 것을 삼가 줄 것을 당사국에 요청했습니다.

1.3 2020 년 9 월 7 일, 당사국은 통보의 허용 가능성을 본안과 분리하여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1 년 3 월 11 일, 위원회는 잠정 조치를 유지하면서 통보의 허용 가능성을 본안과 함께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통보인을 공항 환송구역에서 퇴거시키고, 기본적인 숙소와 적절한 음식 및 영양, 그리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 사실 관계 배경

2.1 통보인은 DRC 의 사업가였습니다. 2015 년, 통보인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돕기 위해 두 명의 남성 동료 아부(Abou)와 카타웨자(Kataweza)를 보냈습니다. 이후 통보인은 아부와 카타웨자가 DRC 동부에서 활동하는 우간다 주도의 무장 반군 단체인 민주군 연합-우간다 해방 민족군(ADF-NALU)에 강제로 가담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 년 후, 통보인 본인도 납치되어 ADF-NALU 에 강제 가담하게 되었고 베니(Beni)의 숲에서 군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 중 통보인은 약물에 취한 ADF-NALU 조직원들이 다른 사람들을 살해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또한 콜탄, 우라늄, 전기석과 같은 광물을 채굴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통보인은 반군 단체를 범죄 조직으로 간주했으며, 가담 6 개월 후 ADF-NALU 가 정부군과 전투를 벌이는 틈을 타 도주할 수 있었습니다.

2.2 통보인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ADF-NALU 에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료 카타웨자가 살해당했기 때문에 카타웨자의 가족은 통보인을 ADF-NALU 조직원이라고 비난하며 그의 집을 불태우고 쌍둥이 형제를 살해했습니다. 통보인은 ADF-NALU 가담 혐의로 박해를 받을 것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통보인의 다섯 자녀와 조카 한 명은 경찰과 반군 가담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피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통보인은 자녀 및 조카와 연락이 끊겼으며 그들의 행방을 알지 못합니다.

2.3 통보인은 비룽가(Virunga) 국립공원에 4 개월간 숨어 지냈습니다. 그 후 인도네시아에 있는 친구의 도움으로 DRC 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통보인은 르완다로 건너가 키갈리 공항을 통해 인도네시아로 도피했습니다. 그는 DRC 정보국이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요원을 보냈다고 의심하여 베트남으로 도망쳤고 하노이에 있는 유엔난민기구(UNHCR)에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통보인은 방콕으로 가서 도움을 받으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대신 그는 팔라우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2.4 2020 년 2 월 15 일, 팔라우로 가던 중 통보인은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해 환승객 신분으로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뒤 여권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여행할 기운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통보인은 입국 심사대의 출입국 관리 공무원에게 다가가 당사국에 난민 지위 신청을 하고 싶다고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22:48 경). 그는 망명 신청 이유에 대해 짧은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공무원은 통보인의 진술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그의 신분증을 스캔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그가 환승객이며 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국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통보인은 아시아나 항공 직원에게 인계되어 공항 제 1 터미널 환승구역으로 인도되었습니다. 통보인은 그때부터 환승구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시아나 항공 직원들이 쿵고

외교관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자신을 환송구역에서 나가 당사국을 떠나도록 강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5 난민 신청 접수가 거부된 후, 2020 년 3 월 3 일 통보인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대한민국 UNHCR 사무소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UNHCR 은 한국 변호사들에게 연락했고, 변호사들은 2020 년 3 월 31 일 인천지방법원에 통보인의 공항 내 난민 신청 접수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통보가 제출될 당시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 계류 중이었습니다.

2.6 통보인은 기본적으로 국경에서의 난민 신청 거부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 위험에 대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사실상의 강제송환(de facto refoulement)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통보인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개인이 당사국의 관할권 밖에 있음에도 법원에서 소송이 수리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통보인은 당사국이 언제든지 자신을 환송구역에서 쫓아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당사국으로부터의 추방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비록 본 사건이 인천지방법원에 계류 중일지라도 강제송환의 위험은 임박해 있었습니다.

2.7 그는 당사국이 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이 거절된 신청자들을 '송환대기실'에 구금해 왔음을 지적합니다. 자신의 경우 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을 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난민 신청 불회부 결정이나 송환 명령조차 내려지지 않았으며, 아무런 도움이나 해결 기약 없이 환송구역에 방치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환송구역 내 구금의 적법성을 심사할 법률이나 정책이 부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8 위원회에 통보를 제출한 후인 2020 년 7 월 13 일, 통보인은 인천지방법원에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제기하며 환송구역 체류가 인신보호법상 "불법적으로 개시된 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 년 4 월 13 일, 통보인은 행정 소송 승소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며 난민 지위 인정(RSD)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난민 신청자 비자로 국내에 체류했습니다.

2.9 그러나 제출 당시 통보인은 행정적 망명 절차 및 관련 행정 소송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고 있어 그러한 구제 수단을 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용 가능한 국내 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판례를 인용하며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한 구제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동일한 사안이 다른 국제 조사나 해결 절차에 제출된 적은 없습니다.

3. 주장(Complaint)

3.1 통보인은 2020 년 2 월 15 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회복 불가능한 피해 위험에 대한 검토 없이 난민 신청을 거부한 것이, 만약 자신이 송환된다면 규약 제 6 조와 제 7 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거부는 규약 제 7 조를

위반하여 반군 조직원이자 모집책으로 지목되어 당국과 카타웨자 가족의 위협을 받고 있는 DRC 로의 사실상의 강제송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실질적인 위험에 처해 있음을 입증했다고 주장합니다.

3.2 한국 법에 따르면 난민 신청은 출입국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입국장에서 난민 신청을 할 경우 실질적인 주장에 대한 본 심사 대신 회부 심사(admissibility assessment)를 받게 됩니다. 난민 신청자의 강제송환 금지를 보장하기 위해, 당사국은 신청 장소에 관계없이 규약 제 6 조와 제 7 조에 따른 회복 불가능한 피해 위험을 검토하는 적법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당사국이 통보인의 난민 신청을 거부한 유일한 근거는 그가 '입국 심사를 받는' 외국인이 아니라 단순 환송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사국은 난민법 제 6 조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입국 심사를 받는' 외국인만이 입국장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3 통보인은 환송구역을 포함한 공항의 제한된 구역에 갇히는 것은 규약 제 9 조에 따른 신체의 자유 박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행정 명령 없이 법적 근거 없이 그를 인천국제공항 환송구역에 무기한 구금하고, 구금의 적법성을 심사받을 가능성조차 차단한 것은 규약 제 9 조(1)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3.4 통보인은 DRC 로 돌아갈 경우 고문이나 다른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당사국을 떠날 선택지가 없으므로 환송구역에 자발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당사국에 체류한 개인에 대해 입국 금지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늘어남에 따라, 통보인은 다른 나라로 여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2020 년 2 월 15 일부터 환송구역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장기 구금의 적법성을 결정할 독립적인 심사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으며,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 청구도 공항 환송구역 구금자에 대한 전례가 없어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3.5 나아가 통보인은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의료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24 시간 내내 켜져 있는 전등 아래에서 생활해야 하는 등 비인도적인 환경에 처해 있으며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방치되어 감염 위험으로 인한 생명 위협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당사국은 규약 제 6 조(1), 제 7 조 및 제 10 조(1)에 따른 통보인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4. 허용가능성(admissibility)에 대한 당사국의 의견

4.1 2020 년 9 월 7 일, 당사국은 통보의 허용가능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허용 가능성을 본안과 별도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첫째, 당사국은 사실관계에 대해 통보인이 2020 년 2 월 18 일이 되어서야 공항 보안 요원에게 비호신청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 년 3 월 31 일, 통보인은 인천지방법원에 당사국의

난민 신청 거부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2020년 6월 4일 판결에서 통보인이 공항 내 출입국 심사대에서 난민 지위 신청 의사를 표시했거나 당사국이 그러한 신청 접수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근거와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난민법 제5조 제4항("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난민지위 인정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신청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도와야 한다")을 인용하여 통보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사국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되었습니다. 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한 후인 2020년 7월 13일, 통보인은 인천지방법원에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제기하며 환송구역 체류가 인신보호법상 "불법적으로 개시된 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이었습니다. 당사국은 비호신청 관련 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고 인신보호 청구 역시 인천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통보인이 이용 가능한 국내 구제 절차를 다 거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당사국은 사법 절차의 기간이 부당하게 또는 불합리하게 지연되지 않았으므로 통보인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간주했습니다.

4.2 이후 당사국은 통보인이 공항 환송구역에 계속 머물렀으며 그곳에서 의료 진료를 포함한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의 인신보호 청구는 2020년 11월 19일 인천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통보인이 구금자가 아니라 당사국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환송구역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통보인은 이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인천고등법원에 계류 중이었습니다.

5. 허용 가능성에 대한 통보인의 답변

5.1 2020년 12월 14일, 통보인은 허용 가능성에 대한 당사국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며, 관련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고 성공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국내 구제 절차 미진행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정신적 긴장으로 인해 사실관계 진술에 일부 불일치가 있었음을 바로잡으며, 당사국이 그를 환송구역에 가두어 됨으로써 적절한 생계 수단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리인 지인들이 기부한 현금으로 음식을 사고 환송구역 승객들이 가끔 주는 음식으로 연명했습니다. 환송구역 내에 라운지, 샤워실, 무료 인터넷 키오스크가 있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통보인은 샤워 시설이 코로나 19 발생 이후 폐쇄되었으며 일주일에 한 번만 사용이 허가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송구역 내 구금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2020년 11월 19일 통보인을 구금자로 간주하지 않아 인신보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통보인은 항소했고 사건은 인천고등법원에 계류되었습니다. 통보인의 관점에서는 사법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난민 신청 불허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지 않는 한 환송구역을 떠나는 것이 허용될지 불분명했습니다.

5.2 통보인의 건강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인천국제공항 내 병원으로 보내졌으나 적절한 검사와 진단 없이 진통제만 처방받았습니다. 음식, 적절한 숙소 및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당사국은 그의 생명권을 침해했습니다.

5.3 난민 지위 신청 자격과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은 2020년 6월 4일 판결에서 통보인이 2020년 2월 18일부터 난민 신청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통보인은 당사국이 난민법 제6조에 따라 통보인이 난민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난민 지위 인정(RSD)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통보인을 돕지 않은 당사국의 부작위가 난민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당사국은 통보인이 단순 환승객이므로 난민 신청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6. 허용가능성 및 본안에 대한 당사국의 의견

6.1 2022년 7월 6일 제출된 의견에서 당사국은 통보가 허용될 수 없거나 이유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6.2 허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당사국은 통보인이 가능한 모든 국내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국내 구제 수단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비효율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사국은 통보인이 환승구역에 있는 동안인 2020년 3월 31일 인천지방법원에 "정부의 난민 신청 거부를 취소하고 입국항에서의 RSD 절차 미개시가 위법함을 인정해 달라"고 청구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6.3 통보인은 행정 소송 승소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며 RSD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난민 신청자 비자로 국내에 체류해 왔습니다. 따라서 통보인의 권리는 국내 사법 절차를 통해 옹호되었습니다.

6.4 본안과 관련하여 당사국은 출입국 당국이 국경에서 난민 신청을 거부한 것이 강제 추방이나 사실상의 강제송환을 구성하여 규약 제6조(1) 및 제7조를 위반했다는 통보인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4항에 따라 RSD 절차 중에는 통보인의 의사에 반해 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6.5 제9조 주장과 관련하여 당사국은 통보인이 2020년 2월 15일 인천국제공항 도착 당시 팔라우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었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통보인은 언제든지 환승구역을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곳에 남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의적 체포나 구금" 또는 "자유 박탈" 행위는 없었으며 당사국은 규약 제9조(1)에 따른 의무를 준수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국은 통보인이 환송 중 긴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규약 제 10 조(1)를 준수했다고 단언했습니다.

7. 당사국 의견에 대한 통보인의 답변

7.1 2022 년 11 월 7 일, 통보인은 2022 년 7 월 6 일자 당사국 의견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7.2 통보인은 인천고등법원의 확인을 거쳐 인천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2021 년 4 월 13 일 환송구역에서 석방되었음을 언급했습니다. 2021 년 5 월 24 일 당사국은 통보인의 난민 신청을 수리했습니다. 이는 통보인에 대한 난민 신청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2021 년 4 월 21 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2022 년 11 월 현재까지 통보인의 RSD 절차에는 진척이 없습니다. 그는 임시 비자로 당사국에 계속 체류하고 있습니다. 통보인은 건강 악화로 인해 근로 계약이 계속 종료되고 정기적인 수입이나 사회적 지원 없이 자선 활동에 의존하며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7.3 환송구역 내 구금과 관련하여 당사국은 그를 가능한 한 빨리 석방했어야 하며, 적어도 당국의 난민 신청 거부가 위법하다는 2020 년 6 월 4 일 인천지방법원의 판결 이후에는 석방했어야 합니다. 통보인은 2021 년 4 월 13 일 인천고등법원이 발행한 석방 잠정 조치 요청 이후에야 비로소 공항 환송구역에서 석방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제 절차의 지연은 정당화되지 않았으며 불합리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생명권 침해와 관련하여 통보인은 공항 환송구역에서 구제책 없이 14 개월 동안 머물며 생명을 위협하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당사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RSD 절차 진행 중 그에 따른 보복이 두려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손해배상 청구를 이용 가능한 구제 수단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7.4 또한 통보인은 규약 제 6 조(1) 및 제 7 조에 대한 당사국의 이의 제기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사국이 RSD 절차와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규제 권한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당사국은 통보인이 단지 환송객이라는 이유만으로 난민 신청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국경에서의 난민 신청 결정에 대한 실효적이고 독립적인 심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법적 조항이 없다면, 거부된 비호 신청자들은 강제송환 금지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어 규약을 위반하게 됩니다.

7.5 제 9 조(1) 위반 주장에 대한 이의와 관련하여 통보인은 당사국의 주장이 비호 신청자가 환송구역과 당사국을 자유롭게 떠나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다는 법적 허구에 근거하고 있다고 봅니다. 통보인은 사람을 구금하기로 한 모든 결정은 구금의 정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위원회의 결정을 인용했습니다. 구금은 당사국이 적절한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통보인은 비록 특정 장소에 가두기로 하는 명시적인 결정은 없었으나,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통보인이 환송구역을 떠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의 자유를 박탈한 것은 당사국의 행정권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국경에서 거부된 비호 신청자들의 환송구역 내 구금을 금지하는 입법적 조치가 없다면 당사국은 사실상 거부된 신청자들에 대한 자의적 구금을 계속 관행으로 유지하는 것이며, 이는 규약 제 9 조(1) 위반입니다.

7.6 제 6 조(1), 제 7 조 및 제 10 조(1) 위반 주장과 관련하여 통보인은 당사국이 통보인이 공식적으로 구금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한 시설을 갖춘 환송구역 내에서 그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통보인은 이에 반박하며 자신이 빈털터리 상태였고 환송구역 내 물건과 서비스의 높은 가격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당사국이 14 개월 동안 8 차례에 걸쳐 법률 대리인과의 인터뷰를 위해 별도의 방을 제공한 사실을 "인도적"이라고 규정한 방식에 대해서도 반대했습니다. 그는 비호 신청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담실 제공은 법적 요구 사항이지 인도적인 선의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규약은 국가에 의해 자유가 박탈된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고도의 주의 의무를 당사국에 요구합니다. 그러나 당사국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부터 통보인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통보인은 환송구역에서의 생활이 음식, 마스크, 비누, 상비약 등 기부 물품으로 유지되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샤워 시설이 폐쇄되어 위생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의료 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환송구역에서 통보인의 삶을 지탱할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한 것은 당사국이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규약 제 6 조(1), 제 7 조 및 제 10 조(1)에 따른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7.7 통보인은 2017년 납치된 후 강제로 고향을 떠나 돌아갈 안전한 곳이 없었으며 33 개월 넘게 법적 보호나 구제책 없이 방치되었음을 상기시킵니다.

8. 당사국의 추가 의견

8.1 2023년 2월 1일, 당사국은 통보인에 대한 RSD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이는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비효율적이지 않은 이용 가능한 국내 구제 수단이라고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당사국은 자국의 상대적으로 낮은 난민 인정률을 인정하고 RSD 절차의 시간 소모적인 특성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여, RSD 심사관 수를 늘리고 RSD 인터뷰의 절차적 공정성을 개선하는 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8.2 통보인의 공항 환송구역 장기 체류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법원에서의 성공적인 행정 소송 후 2021년 4월 13일 환송구역을 나갔음을 상기시키며 부당한 지연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만약 통보인이 생명권 침해 등 정부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사법적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8.3 당사국은 2021년 5월 24일부터 통보인의 난민 신청이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외한 통보인이 처음에 요구한 모든 구제 수단은 국내 절차를 통해 충족되었거나 무의미해졌다고 주장합니다. 통보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시도하지 않았으므로 그의 통보는 허용될 수 없다고 선언되어야 합니다.

8.4 당사국은 또한 환송구역에서의 난민 신청 정책 개혁에 대한 본안 의견을 제출하며, 공항 환송객도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서울고등법원의 난민법 해석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공항 환송객이 입국 및 난민 신청 의사를 표시할 경우 "지체 없이" 관련 공무원에게 인계되어 후속 처리를 받도록 「난민업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당사국은 또한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을 위한 공항 대기 구역의 개선 사항도 언급했습니다.

9. 통보인의 추가 답변

9.1 2023년 6월 8일, 통보인은 당사국에 보호를 요청하러 도착한 지 39개월이 넘도록 난민 신청이 1단계에서 계류 중이며 2023년 6월 현재까지 RSD 심사관과의 인터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추가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통보인은 건강 상태로 인해 일할 수 없었으며 난민 신청자로서 어떠한 사회보장 서비스도 받을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당사국의 보호 없이 빈곤한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9.2 통보인은 계류 중인 RSD 절차가 결론이 나더라도 공항 환송구역 내 구금에 대한 보상이나 생명권 침해 주장을 포함한 그의 주장 본안을 다루지 못할 것이므로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는 환송구역 내 구금으로 인해 2023년 4월 24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음을 알렸습니다.

9.3 통보인은 또한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2021년 4월 21일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공항 내 환송객의 비호 신청을 허용하고 지체 없이 신청을 처리하도록 공항 환송구역 조건을 개선하려는 당사국의 노력을 주목했습니다.

10. 당사국의 추가 의견

10.1 2023년 11월 17일, 당사국은 국내 구제 절차 미진행 주장을 되풀이하며 허용 가능성 및 본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10.2 통보인이 RSD 절차를 밟고 있는 동안 그것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비효율적이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통보인은 또한 2023년 4월 24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국내 구제 절차는 실효적이고 시의적절함이 입증되었으며 통보는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10.3 통보인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데 부당한 지연이 있었다는 비판과 관련하여, 당국은 2023년 6월에 통보인을 두 차례 소환했으나 그는 사전 통보 없이 예약된 시간에 출석하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8월 3일 당국은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2023년 8월 29일 통보인의 난민 지위 신청은 거부되었으며 인도적 체류 자격도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통보인은 법무부 장관에게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2023년 10월 현재 진행 중이었습니다. 장관에 대한 그의 이의신청은 이용 가능한 국내 구제 절차를 다 거치지 않았음을 입증합니다. 따라서 RSD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었다는 통보인의 비판은 근거가 없습니다.

10.4 난민 인정률이 낮아 RSD 절차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과 관련하여, 데이터에 따르면 RSD 절차는 효율적이며 이의신청 기회가 보장됩니다.

10.5 당사국은 공항 환송구역에서 외국인을 자의적으로 구금했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부인했습니다. 난민법은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일반 RSD 시스템과 도착 외국인을 위한 입국항 RSD 시스템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1951년 난민 협약과 일치합니다. 입국항에 도착한 외국인이 난민 지위를 구하나 거부될 경우, 해당 개인은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제3국으로 가거나 또는 입국항에 머물며 사법 절차를 통해 결정에 불복할 선택권을 가집니다. 당국이 난민 신청을 거부하면 개인은 입국이 불허되어 공항을 떠날 수 없습니다. 본국 송환에 반대하더라도 인신 자유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개인은 공항의 출국 및 환송 구역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으며 자신의 선호에 따라 공항 체류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6 인천국제공항 터미널은 도보로 50분이 소요되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며, 개인은 더 이상 터미널 내부의 출국 대기 구역과 같은 제한된 공간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출국 대기 구역이 비자발적으로 무기한 구금될 수 있는 시설이라는 통보인의 주장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10.7 당사국은 또한 구제 수단 부재와 RSD 절차의 부당한 지연으로 생계가 박탈되어 통보인의 생명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반대했습니다. 난민법 제40조에 따라 난민 신청자는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통보인은 그러한 신청을 한 적이 없으며 취업 허가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통보인은 2023년 3월에 의료비를 한 차례 신청했으나 요청 금액이 기준치보다 너무 작아 거절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통보인이 공항 환송구역 체류 중인 2020년 7월 7일에 진료를 받았으며 의료 기록에는 긴급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사국은 정부가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아 그를 빈곤하게 만들어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통보인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당사국은 규약 제 6 조(1), 제 7 조, 제 9 조(1) 및 제 10 조(1) 위반이 없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10.8 공항 출국 대기 구역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당사국은 그러한 주장이 위원회의 검토 범위를 벗어나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향후 유사 사례를 대비해 개선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제적 제약으로 공항 환승구역에서 음식을 구하기 어려워 승객들이 주는 음식에 의존했다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출국 대기 구역의 관리가 정부로 이관된 2022 년 8 월부터 공공 예산으로 식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품질과 관련하여 당사국은 아침은 간식으로, 점심과 저녁은 국제선 기내식과 동일하게 제공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품질이 낮다는 주장은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10.9 출국 대기 구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거의 이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당사국은 현장에서 기본적인 약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2022 년 인천국제공항 구급대원들이 23 건의 가벼운 질환을 처리했고 12 건은 공항 밖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고 제출했습니다.

10.10 입국항 외부에 출국 대기 센터를 설립하는 법안 초안과 관련하여 통보인은 그러한 센터 운영이 난민 신청자의 무기한 구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사국은 2022 년 12 월 15 일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인 해당 법안이 식사 및 개인 소지품 제한에 대한 우려를 포함하여 공항에 장기간 체류하는 사람들의 생활 조건과 권리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자의적 구금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11. 통보인의 추가 답변

2025 년 6 월 2 일, 통보인은 RSD 절차 현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출하며, 2023 년 8 월 29 일 인천출입국사무소에 의해 난민 신청이 거부되었고 2023 년 11 월 24 일 법무부 장관에 의한 이의신청도 기각되었음을 언급했습니다. 이후 통보인은 인천지방법원에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2024 년 7 월 26 일 통보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통보인은 또한 국가배상법 제 2 조 제 1 항에 따라 공무원들이 그를 난민 신청 절차 없이 14 개월 동안 공항 환승구역에 방치함으로써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024 년 6 월 19 일 통보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2. 위원회의 쟁점 및 절차

허용 가능성 검토

12.1 위원회는 통보에 포함된 주장을 고려하기 전, 의사규칙 제 97 조에 따라 선택의정서상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12.2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 5 조(2)(a)에 따라 동일 사안이 다른 국제 조사나 해결 절차에서 검토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12.3 위원회는 통보인이 이용 가능한 모든 국내 구제 절차를 다 거치지 않았다는 당사국의 주장에 주목합니다. 당사국은 통보가 제출될 당시 처분 취소 신청이 계류 중이었고, 이후의 난민 신청 및 RSD 절차도 계류 중이었으며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법원이 통보인 승소 판결을 내렸고 통보인이 공항에서 나가 국내에 입국함으로써 사법적 구제가 실효적이었음이 증명되었으며 통보인의 주장은 해결되었거나 무의미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통보인이 2023 년 4 월 24 일에서야 손해배상 청구를 제출했다는 당사국의 단언에도 주목합니다.

12.4 위원회는 국내 구제 절차를 다 거쳤으며 구제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고 성공 가능성이 낮았다는 통보인의 주장에도 주목합니다. 통보인은 특히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a) 국경에서의 난민 신청 거부는 이의방법이 없었음. (b) 2020 년 3 월 31 일 인천지방법원에 난민신청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통보인이 환송객일지라도 난민 신청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며 승소 판결을 내렸음. (c) 정부가 항소함에 따라 절차가 길어졌고 고등법원이 석방을 명령한 후인 2021 년 4 월 13 일 석방될 때까지 환송구역 구금이 14 개월간 연장되었음. (d) 2020 년 7 월 13 일 인신보호 청구를 제기했으나 2020 년 11 월 19 일 기각되었음. (e) 난민 신청과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으며 항소심이 계류 중임.

12.5 위원회는 통보인의 주요 주장이 당사국 영토에 입국하지 않은 환송객에 대한 난민 신청 기회 부재, 국경에서의 거부 결정에 대한 항소 기회 부재, 환송구역 구금 중 자신의 권리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주목합니다. 위원회는 통보인이 민사 구제 절차를 밟으며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는 등 절차가 비효율적이었다는 추가 주장도 살펴봅니다.

12.6 위원회는 통보인이 구제 수단이 해당 사건에서 실효적이고 통보인에게 사실상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국내 구제 절차를 거칠 의무가 있으며, 구제 수단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는 경우 실효적이라고 간주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상기합니다. 또한 불만 사항을 검토할 때 국내 구제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은 통보가 검토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판례도 상기합니다.

12.7 본 사건에서 위원회는 통보인이 2020 년 3 월 31 일 취소 청구를 제출했고 최초 통보 제출 후 점진적으로 국내 구제 수단을 사용해 왔다는 당사국의 주장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통보인이 자신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 공항 환승구역에 있는 동안, 그리고 행정 소송의 정지효가 부재하여 언제든지 강제송환될 위험을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국내 수준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시도를 했음을 주목합니다. 또한 통보인은 국경에서의 난민 신청 거부에 대해 이의할 절차가 없었으며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취소 소송만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통보인의 비호 신청이 결국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RSD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집행 정지 효력이 없었음을 관찰합니다. 더욱이 2 년 넘게 해결되지 않았으며 면접지연 등이 포함되었고 난민 신청은 거부되었습니다. 동시에 통보인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12.8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위원회는 관련 국내 구제 절차가 이용 불가능했거나(예: 환승객의 난민 신청 거부에 대한 항소 부재), 부당하게 지연되었거나(예: 취소 소송 후 RSD 절차가 이어짐), 부분적으로만 실효적이었다고(예: RSD 절차 지연 및 집행 정지 부재, 낮은 인정률, 인신보호 및 손해배상 청구의 비효율성 등) 간주합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 5 조(2)(b)에 따라 통보인의 주장을 검토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결론짓습니다.

12.9 비호 신청 접근권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통보인의 난민 신청이 2021 년 5 월에 마침내 접수되어 2023 년 국가 비호 당국에 의해 거부되었으며, 통보인이 비호 절차의 절차적 부당성이나 자의성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주목합니다. 위원회는 DRC 로 송환될 경우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실질적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는 규약 제 6 조(1) 및 제 7 조에 따른 주장이 위원회 앞에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선택의정서 제 2 조에 따라 허용 불가능하다고 선언합니다. 또한 구금 조건으로 인한 생명 및 존엄성 침해 주장 역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제 2 조에 따라 허용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12.10 그러나 위원회는 공항 환승구역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 관한 제 7 조 주장과 제 9 조(1) 및 제 10 조(1)에 관한 주장은 허용 가능성을 위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간주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장들을 허용 가능하다고 선언하고 본안 검토를 진행합니다.

13. 본안(merit) 검토

13.1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 5 조(1)에 따라 당사자들이 제출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통보를 검토했습니다.

13.2 규약 제 7 조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국경에서의 난민 신청이 즉각 거부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 위험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통보인의 주장에 주목합니다. 위원회는 난민법 제 6 조에 따라 외국인은 출입국항에서만 난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승구역에서는 할 수 없다는 당사국의 주장을 주목합니다. 당사국은

'입국 심사를 받는' 외국인만이 신청 자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통보인은 강제송환 금지 의무가 입국 심사 중인 자에게만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당사국 관할권 내의 모든 개인에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국내 법원이 공항 환송구역이 당사국의 관할권 아래 있으므로 환송객에게도 비호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음을 관찰합니다. 당사국의 후속 입법 개정 및 정책 변화 시도도 주목합니다.

13.3 위원회는 규약에 따른 당사국의 일반적 법적 의무에 관한 일반논평 제 31 호(2004)를 상기하며, 제 6 조 및 제 7 조가 규정하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인도나 추방 등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언급합니다. 또한 제 7 조의 주장이 있는 경우 집행 정지 효력을 가진 독립적인 심사 기회가 있어야 함을 상기합니다.

13.4 본 사건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통보인의 난민 신청 처리를 거부한 유일한 근거가 그가 난민법 제 6 조(1)상의 '입국 심사를 받는' 외국인이 아니라는 점이었음을 관찰합니다. 난민 협약상의 의무가 국내법을 통해 이행되더라도 국내법은 인권법과 규약상의 의무를 동시에 준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위원회는 통보인이 국경이나 영토가 아닌 환송객이라는 이유만으로 2020 년 2 월 15 일부로 비호 신청 권리를 거부당했다고 간주합니다. 위원회는 통보인의 난민 신청이 형식적인 이유로 거절됨으로써 DRC 로의 강제송환으로부터 보호를 구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사국이 규약 제 7 조에 따른 통보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결론짓습니다.

13.5 제 9 조(1)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난민 신청이 거부된 후 통보인이 아무런 행정 명령 없이 법적 근거 없이 2020 년 2 월 15 일부터 인천국제공항 환송구역에 무기한 구금되었으며 구금의 적법성 심사 가능성도 차단되었다는 주장에 주목합니다. 당사국은 거부된 이들이 자유롭게 떠날 수 있으며, 남기로 결정할 경우 공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구금 결정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위원회는 통보인이 행정 소송 결과를 기다리며 14 개월 동안 환송구역에 머물러야 했음을 관찰합니다.

13.6 위원회는 신체의 자유 박탈이 공항의 제한된 구역에 갇히는 것을 포함하여 좁은 공간 내에서의 엄격한 이동 제한을 수반하며 그러한 박탈이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이루어진다는 판례를 상기합니다. 또한 난민을 장기간 무기한 구금하는 것은 자의적일 수 있음을 관찰합니다. 본 사건에서 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 환송구역이 당사국의 관할권에 속한다는 사실이 당사국에 의해 부인되지 않았음을 고려합니다. 위원회는 통보인이 당사국을 떠나는 것 외에 공항을 나갈 방법이 없는 상태로 14 개월 동안 사실상 구금되었으며, 인신보호 청구가 비효율적이게 되어 행정 소송을 통해서만 석방될 수 있었다는 주장에 주목합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통보인에 대해 어떠한 행정 명령도 없이 법적 근거 없이 공항 환송구역에 구금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통보인이 얼마나 구금될지 알지 못한 채 무기한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금되었으며, 비례성이나 필요성도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본 사건의 상황에서 자의적인 구금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로써 규약 제 9 조(1)에 따른 통보인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13.7 제 10 조(1)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환송구역에서 비인도적이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처해 있었으며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방치되었다는 주장에 주목합니다. 또한 통보인에게 음식, 숙소, 의료 서비스, 위생 시설 및 법률 상담이 제공되었다는 당사국의 반대 의견도 주목합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통보인이 2021 년 4 월 13 일 석방될 때까지 비위생적인 조건, 충분하지 않은 숙소, 적절한 음식과 약품의 부재, 그리고 24 시간 내내 켜져 있는 조명에 노출되었음을 관찰합니다. 위원회는 규약 제 10 조(1)에 따른 통보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합니다.

14. 자유권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 5 조(4)에 따라 당사국이 규약 제 7 조, 제 9 조(1) 및 제 10 조(1)에 따른 통보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견해를 밝힙니다.

15. 규약 제 2 조(3)(a)에 따라 당사국은 통보인에게 실효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규약상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에게 완전한 배상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당사국은 통보인이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국은 향후 유사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16. 당사국은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됨으로써 규약 위반 여부를 결정할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했으며, 규약 제 2 조에 따라 영토 내 및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게 권리를 보장하고 침해가 확인된 경우 실효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견해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180 일 이내에 당사국으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당사국은 본 견해를 출판하고 당사국의 언어로 널리 유포할 것을 요청받습니다.